

윤리헌장

현대자동차그룹은 21세기 국가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헌장서문



우리 현대자동차그룹은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바탕으로 국가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고 시킴으로써 21세기 국가 경제 성장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다.

본 윤리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윤리경영 실천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전 사업장의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본 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01 국가와 사회에의 기여

- 우리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우리는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02 고객 및 주주의 권익 증진

- 우리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 우리는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킨다.

03 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04 협력업체와의 동반자 관계 확립

- 우리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05 투명경영의 정착

- 우리는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과 거래처를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조건에서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직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 윤리실천강령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윤리헌장 정신의 구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은 윤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윤리헌장 정신의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윤리헌장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본 윤리실천강령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 사업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준수 의무를 가진다. 협력업체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법인, 에이전트, 중개인, 합작회사가 포함된다.

우리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우리는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우리는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우리는

고객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수하지 않으며, 사내 임직원 간의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단호히 배척한다.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일절 회피한다.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성취하고, 부단한 자기계발로 국가·사회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직장 윤리규정

현대자동차그룹은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 고객간, 협력업체 및 경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 윤리규범을 정하고 직장 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업체에는 현대자동차와 각종 거래를 갖는 개인, 법인, 에이전트, 중개인, 합작회사가 포함된다. 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 [조 직]

1. 본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직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직장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 운영 절차는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 [주관 팀]

본 규정 집행의 주관 팀은 본사 인사팀, 각 지역 인사 담당팀으로 한다.

제 5 조 [직장윤리규범 정의]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공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

제 6 조 [관련 규정 적용]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리의 처리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장 직장윤리규범

제 7 조 [직장윤리 기본규범]

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
4.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5. 자기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 8 조 [윤리규범 준수사항]

임직원은 직장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문화를 지향하며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 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국 자동차산업을 지킨다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
- 다.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 라. 직무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 마.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
- 바. 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배격한다.
- 사. 국내외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아. 기타 상기 제 7 조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 9 조 [윤리규범 위반사항 신고]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 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직장윤리위반신고센터를 주관 팀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3.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처리]

1.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경영개선실은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 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 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4.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적의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

제 11 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1.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2. 징계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 징계 대상 및 징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징계 대상

- ①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 ② 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나. 징계 내용

- 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시 : 미신고자, 해당 직원 징계 조치, 협력업체 거래 중단 (재발시 영구제명)

- ② 직권 이용 금품요구시 : 해당 직원 징계 조치
- ③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시 :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 여부 결정

4 장 직장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2 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직장윤리위원회는 1 심 및 재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사내 징계위원회와 동일하다.
2. 직장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 [윤리위원회 개최]

1. 직장윤리 관련 비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개선실 또는 해당 부서는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위원회 간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위원회 간사는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제 14 조 [윤리위원회 운영]

1. 직장윤리에 관한 포상과 징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우선 심의하고 포상은 포상위원회를 속개하여 심의 결정한다.
2. 직장윤리 관련 징계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은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사후 관리]

직장윤리와 관련하여 본부 단위로 매년 1 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